

稅制發展의 方向

金 成 斗

朝鮮日報・論説委員

■ 目 次 ■

- 1. 稅發委 그리고 直·間接税
- 2. 國稅와 地方稅의 조정
- 3. 目的税 時限 지켜야
- 4. 너무 낮은 所得課稅

1. 稅發委 그리고 直·間接税

世稱「稅發委」는 지난 연말 「稅制發展 연구 보고서」라는 아주 두툼한 책자를 발표하고 그 기능을 일단 마무리지었다. 稅發委 즉 稅制發展 審議委員會는 84년 가을에 구성되어 그동안 4개 분과위원회로 나누어져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렇게 볼 때 최종 연구보고서는 꼭 1년만에 완성된 셈이다. 이 연구보고서는 그 머릿말에 그동안 우리나라 稅制가 경제사회와 문화적 환경변화에 적응하면서 發展을 거듭해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60년대와 70년대에 있어서 우리의 경제 운용방향이 경제의 總量的 增大에 우선적 비중을 두게 됨에 따라 세계가 경제의 특정부분에 차별적 선별적으로 개입하게 됨으로써 負擔의 公平化라는 현실적 과제를 안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설파하고 있다.

사실, 말은 이렇게 점잖게 하고 있지만 그 뜻하는 바는 상당히 심각한 일면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稅制改革은 거의 年中 행사처럼 되풀이되어 나왔다. 그런데도 지금 다시 종합적이며 대대적으로 稅制를 뜯어 고쳐야 할 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동안 연중행사로 되풀이해 나온 稅制改革이 무언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負擔의 公平化라는 現實的 課題란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말은 「負擔의 公平化라는 現實的 課題」라고 점잖게 썼지만 사실은 「負擔의 不公平化」를 조성해 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租稅의 理想은 무엇보다 課稅의 公平을 期하는 것이다. 그것도 能力에 따라 부담하는 應能부담의 원칙에 따라 公平해야 하는 것이다. 公平만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다. 資源分配의 効率性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데 이 公平性과 効率性은 相衡하게 마련이다. 이 兩者

의 충돌을 배제하고 최대한으로 調和를 확보하도록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다. 연중행사로 되풀이되어온 그동안의 稅制改革에서는 이 公平性과 効率性의 調和 문제는 等閑視되어온 것이 틀림없다. 公平性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効率性만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나왔다. 그런 식의 税制改革이 되풀이되어 나오는 과정을 통해 「負擔의 不公平化」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버렸다.

새삼스레 「稅發委」를 구성하고 종합적이며 근본적으로 税制改革案을 짜게 만든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稅發委」도 懸案의 「負擔의 公平化」라는 우리나라 税制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결하는데는 별 효과를 올리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언제나 그러했듯이 負擔의 公平化를 추구할 수 있는 税收要求上의 여유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 담세율을 크게 상승시키면서 「부담의 公平化」를 기한다는 것이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은 되풀이 되어온 그동안의 税制改革이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져 나왔다는 것에서도 여실한 것이다.

정부나 民間의 우리나라 税制改革에 참여해온 人士들치고 재주가 없어서 「負擔의 不公平」을 방치해 온 것은 아니다. 税制에 관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有能한 사람들이 税制改革작업에 참여해 왔다. 처음부터 그러했다. 그런데도 「租税의 理想」을 실현할 수 없었던 것은 언제나 税收要求가 너무 過大했기 때문이었다. 이번에도 내년부터의 제 6 차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財政需要를 채우기 위해 税收要求는 더욱 늘어야 했다. 그랬던만큼이나 「負擔의 不公平性」은 오히려 조장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가령 그러한 경향의 가장 典型的인 것으로 直接税와 間接税의 比率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國稅에 있어서 直·間接税의 比率은 85년의 경

우 28.6대 71.4로, 逆進的인 間接税가 2.5 대 1로 높다. 1970년엔 그 비율이 38.5대 61.5로 높기는 하되 그러나 지금보다는 훨씬 덜했다. 直·間接税 比率이 과연 어떠한 것이 가장 適正한가 하는 것은 그리 단순치는 않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비해 間接税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그리고 公平을 앞세우기로 하는 한直接税의 비중이 높아야 한다는 것은 異論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公平의 실현을 위해 直接税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税制改革이 있을 때마다 강조되어 나왔다. 그러나 經濟開發을 위한 税收要求의 增大를 손쉬운데로 間接税에 호소하는 것과 아울러 直接税는 減免税制의一方의 대상으로 되어 税制改革은 필요 이상으로 間接税의 비중을 높이는 것으로 시종되어 나왔던 것이다.

2. 國稅와 地方稅의 조정

增稅와 中央集權의 財政運用을 위해 地方財政과 地方稅는 극히 군색한 설정에 놓여져온 것이 그동안의 숨김없는 설정이었다. 國稅와 地方稅 간의 税源配分은 65년엔 84대 16이었으나 70년엔 92대 8로 地方稅의 비율이 크게 위축했다. 그러던 것이 75년엔 90대 10으로, 80년엔 88대 12로 늘어나고 85년엔 87대 13으로 地方稅의 비중이 다소 회복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地方自治 단체의 財政自立度는 형편이 없다. 전국 1백98개 지방자치단체의 財政自立度는 83년의 경우 평균해서 48%에 지나지 않는다. 그나마 自立度가 거의 완전에 가까운 서울(97%), 釜山(95%), 大邱(89%), 仁川(93%) 등 大都市를 포함한 평균숫자가 그렇다는 것이지, 이를 대도

시를 제외한 나머지 9개도의 그것은 평균 31%이고 가장 낮은 江原道는 26%, 全北은 28%에 불과하다. 더우기 그것이 郡단위로 내려가면 최저 7%까지에 이르는 형편없는 수준에 놓여 있는 곳이 많다.

이래가지고서야 지방행정기관이 지방실정과 지방민의 여망을 수렴한 독자적인 행정을 펴 나가기란 엄두조차 낼 수가 없다. 중앙정부로부터 交付税나 보조금이 조금만 줄어들더라도 지방재정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우성을 쳐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사실은 중앙정부로부터 하달되는 劃一的인 指示行政에 철두철미 충실히 밖에 달리 도리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바로 그것을 위해 지방財政의 自立度를 그렇게 형편없이 맞추어 놓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른다.

하긴 중앙정부로부터 交付税가 지급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交付税만큼 지방자치 단체에 배분된 실질적인 税源이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거기에 補助金까지 합하면 더욱 더 그렇다. 地方税라는 税源의 形式的인 配分에다 交付税 補助金 등 移轉税源까지를 합한다면 地方政府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税源은 85년의 경우 22%에 달한다. 중앙정부는 78%이다.

뭐, 그렇다고 地方税의 비율이 적다는 것만으로 税制가 中央集權의이라던가 地方행정이 너무 소홀히 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캐나다는 48대 52로 지방세 비중이 오히려 크고 일본은 66대 34, 미국은 69대 31, 서독은 71대 29로 지방세 비중이 큰 나라가 있는가 하면 프랑스는 93대 7, 영국은 88대 12, 호주는 81대 19, 한국은 88대 12로 지방세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 문제는 地方税 비율이 높다던가 낮다던가 하는데 있다기보다 地方政府가 얼마만큼이나 發言權과 영향력을 지닌 것인가에 달려 있다. 프랑스, 英國 등이 전형적인 민주주의 국

가라는데는 異論의 여지가 없다. 그런 곳에서는 地方税비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地方民 또는 地方政府의 發言權이나 영향력에 손상이 가지는 않을 것이다. 中央정부가 地方정부에 대해 交付税나 補助金을 지급하더라도 그 사용에 대해서는 지방議會의 결정과 地方정부의裁量에 맡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대해 우리나라의 中央集權의 權力構造에다가 主要人事도 중앙정부가 쥐고 있다. 거기에 예산마저 壓倒的인 비중이 중앙정부로부터 배급되는 터이다. 지방행정이 지역적인 문제나 지방주민의 염원에 신경을 쓰기 전에 중앙정부의 정책에만 눈치를 살필 것은 정한 이치이다.

中央集權의 權力構造로 税法을 다루다 보니까 地方税는 國稅에 대한 比率만 낮은 것이 아니라 税源에 있어서도 税收伸張勢가 낮은 財產課稅(66%)에 집중되어 있다. 거기에 대해 國稅는 税收의伸張性과 所得彈力성이 높은 所得·利潤課稅(20%) 및 財貨·用役課稅(47%)로 구성되어 있다. 地方財政의 극심한 窮乏에다가 税收伸張이 여의치 못하다가 보니까 財產稅의 課標를 인상하여 增稅를 꾀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는 與論의 심한 반발을 받고 물러서는 寸劇을 벌리기도 했던 것이다.

地域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地方財政의 自立度를 높혀주는 것이 噫緊하다. 税源의 地域의 偏在가 극심하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地方税收入을 늘려 地方財政의 自立度를 높일 수 있는 余地는 크다. 거기에 地方税收의伸張을 위해 所得 및 消費課稅 分野에 대해 國稅와의 관계에서 調整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稅發委」의 税法심의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方策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기껏, 電話稅, 專壳益金, 酒稅一部의 地方移管을 考慮해 봄직 하다고 전의하고 있을 뿐

이다. 共通税 方式으로, 이를테면 主要税源을 中央정부와 地方자치단체가 共有하여 徵收된 税收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行政需要에 상응, 中央과 地方에 一定比率로 配分하는 것을 장기적인 研究課題로 제기해 놓고 있기는 하나 現실적인 의미는 없다.

그런 가운데 財務部는 재무부대로, 内務部는 내무부대로 각기 별도로 税收增大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전체로서의 税收增大에 効果의이기 때문일 것이지만 納稅者는 어느 것이 國稅이고 어느 것이 地方税인지 알지를 못하고 있고 또 알 필요도 없다. 어느 것이건 不合理하면 그것으로 전체적인 税制의 不合理를 한탄하고, 어느 税目이건 過重하면 전체가 過重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기 때문에 地方税와 國稅의 合理的 조정이 절실한 것이지만 정부는 바로 그 增稅를 위해 조정은 회피하고 있는 것 같으니 딱한 것이다.

3. 目的税, 時限지켜야

限時的 目的税인 防衛税와 教育税는 기한이다 되면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다. 税收가 계속 필요하면 일반적인 經常收入을 늘려 거기에서 조달하는 것이 税制의 合理化를 위해서 소망스럽 뿐만 아니라 財源 확보를 安定的으로 확보한다는 의미에서도 의당한 것이다. 그런데도 「稅發委」는 작년 연말로 끝난 防衛税, 올 연말로 끝나는 教育税의 適用時限을 「우리 나라 財政與件上」 延長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의하고 있다. 그에 따라 防衛税는 90년까지 또 한번 연장되었고 교육세도 91년까지 연장되도록 되어 있다.

사실 「우리 나라 財政與件」을 감안한다면 延長이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면 防衛税法은 거의 영구적으로 附

加税 目的税로서 유지하는 도리밖에 없다. 防衛税는 75년에 시행에 들어가 80년까지를 時限으로 잡았다가 1次로 85년까지로 징수가 연장되고 이번에 다시 2次로 90년까지 연장하게 된 것이다. 현재 防衛税收는 防衛費所要의 40%를 충당하는 중요한 防衛財源이다.

그러나 바로 그러기 때문에 이 經費를 時限附目的税인 방위세로 끌어갈 것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새로운 代替税源을 개발하거나 既存税源을合理的으로 확대해서라도 연구적인 財源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目的税를 時限附로 하는 것은 결코 그것을 長期的으로 끌고 가는 것이 소망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 금액규모가 크면 그럴수록 税制의 不合理를 조장하는 정도가 큰 것임은 말 할 나위가 없다. 「稅發委」는 適用時限의 연장이 불가피한 이유로서 방위세의 규모가 워낙 커 버렸다는 것을 들고 있지만, 바로 그렇다는 사실이 本税와의 統合調整이 時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防衛목적이 강조되는 다른 나라에서도 防衛税가 징수되고 징수기간이 수십년씩 長期化하고 있다는 것을 들고 있지만 그 성질은 우리나라와 같지가 않다. 방위세 성격의 세수입경험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스위스·이스라엘·대만 등이다. 한데 스위스는 1916년부터 1940년까지 財產을 주요課稅對象으로 했으며 1941년부터는 所得을 과세대상으로 바꾸었다. 현행의 所得의 경우 個人所得을 7등급으로 나누어 1.1%~13.2% 범위안에서 累進稅率을 적용하고 있다. 税目名稱도 83년부터는 연방소득세로 변경하고 있는 것과 같이 所得稅 성격이 놓후하다. 우리 나라처럼 12개의 税目에 걸쳐 附加税로 징수하고 있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스라엘은 國防印紙稅와 義務公債가 防衛稅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國防印紙稅

는 그 비중이 거의 보잘것이 없으며 義務公債는 所得稅額에 3.5~5.5%, 증권거래에 2%의 稅率을 적용하고 있을 뿐이다. 대만의 경우는 國防臨時特別稅를 1950년에 3개월을 時限附로 도입한 바 있으나 비상체제가 지속됨에 따라 1978년까지 징수되었다. 그 이후는 教育臨時稅로 변경되어 유지해 오고 있으나 이젠 그 금액도 그리 크지 않으며 課稅對象도 매우 단순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防衛稅를 우리 나라와 같이 큰 규모로, 그나마 國稅目에다 附加稅로 課稅하고 있는 식은 세상에 없다. 그렇다고 防衛稅를 폐지하고 달리 그 만큼의 稅收를 확보할 대책을 도외시하자는 것은 아니다. 앞서도 지적한 바대로 예산상 방위세는 국방비의 40%를 점하는데다가 정부 歲入의 13%에 달한다. 그 만큼의 국방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분명하다면 남은 길은 防衛稅를 本稅에다 통합조정하는 것이다. 어차피 防衛稅를 부담하고 있다면 그것을 本稅에 통합했다고 해서 稅負擔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반면 12개稅目에다 대충一律的으로 附加하고 있는 것을 稅目에 따라 合理的으로 稅率을 조정함으로써 税制의 合理化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現 防衛稅가 租稅體系면에서는 課稅對象, 稅率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은 결코 새로운 사실일 수가 없는 것이다.

目的稅인 教育稅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다. 教員處遇改善과 學校施設擴充을 목적으로 82년 1월 1일부터 징수하기 시작한 教育稅의 적용시한은 8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다. 한데 稅發委의 연구보고서는 「教育稅 폐지에서 오는 稅收결합이 次後의 教育財政 운용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리라는 것을 예상할 때 1회(5년)에 한하여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結論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결론은 「教育財政을 목적세보다 一般稅로 충당함이 타당하며 教育稅를 존속시킨다해도 追加的 稅收에는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논급한 다음에 나온 결론이라는데서 어색함을 느낀다.

정부가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소요재원을 추정해 본 결과 82년부터 86년까지 5년동안 총 4兆 5천 5백89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그 가운데 정부예산에서의 支援可能額은 3兆 8백99억원이다. 결국 不足額은 1조 4천 6백90억원(年平均 2천 9백38억원)이고, 이 不足額의 확보를 위해 教育稅를 신설하게 된 것이며, 올해 徵収豫想額을 합해 1兆 3천 8백21억원이 증수되게 되었다. 그렇다면 대체로 부족액을 확보한 셈인데 또 뭇 때문에 징수기간을 연장하자는 것인가. 硬直性 經費가 큰 비중을 차이하는 것이 우리나라 예산구조이다. 初·中等 교육의 혜택이 전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인만큼 이를 위한 財政動員은 教育稅라는 特定手段보다 一般財源에서 충당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것이 租稅體系上 으로도 타당한 것이거니와 稅率構造면에서도 單一比例稅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累進效果를 기대하기 어렵고 應能原則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거기에 教員의 처우 개선은 일시적인 경비가 아니라 계속적이며 항구적인 經常經費이다. 때문에 임시적인 目的稅인 教育稅와 연결시키는 것도 어색한 것이다. 一時的인 學校施設經費를 教育稅로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초 목적대로의 금액을 다 거두었고, 또 時限이 다 됐다면 폐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教育稅 폐지에 따라 교육재정이 축소되더라도 하는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런 뜻에서는 教育稅를 「폐지」하자는 것이라기 보다 一般稅에 흡수하자는 것이다. 단지 이

경우 一般税化한 教育税가 永久化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一時的 經費인 學校施設費를 줄여도 될 수 있을 경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은 반드시 어려운 課題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오히려 줄여도 될 수 있는 때가 언제 올 것인가 하는 것일 것이다. 學校施設投資를 價例化하면 그것을 줄이지 않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기 마련인 것이다. 거기에 대처할 합리적 방도를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가 오히려 重大한 것이다.

4. 너무 낮은 所得課稅

우리나라 個人所得稅制는 그 기본골격에 있어서는 선진제국과 비슷하지만 그 徵收額의 비중이 형편없이 적다. 그뿐 아니라 시일이 경과하는데 따라 전체 조세체계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낮아져 가고 있다는 것이 아주 특이한 현상이다. 전체 조세체계내에서 개인 소득세의 비중이 낮을 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조세체계 내에서의 개인소득세의 機能이 그만큼 無力할 뿐 아니라 弱化하고 있다는 말과 같다.

OECD先進國의 경우 個人所得稅 徵收額은 평균해서 國民總生產의 12.9% (1983년)이고, 國民所得에 대해서는 14.5%, 總租稅收入의 34.2%, 그리고 內國稅收入의 34.9%이다. 거기에 대해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 증수액은 1983년의 경우 국민총생산의 1.9%, 國民所得의 2.5%, 總租稅徵收額의 9.9%, 總內國稅徵收額의 18.4%에 지나지 않는다. 그나마 1970년에는 각각 3.1%와 3.7%, 21.2%, 29.8%에 달하던 것이 그렇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하긴 台灣, 泰國, 말레이지아등 아시아諸國의 個人所得稅의 비중은 모두가 우리나라보다 다소나마 적은 편이다. 그러나 이들 각국 개인소득세 비

중은 적게나마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와 다른 점이다.

이와 같이 개인소득세의 비중과 기능이 弱化하고 있는 것은 첫째로는 개인소득의 상당부분이 非課稅되거나 課稅對象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所得稅課稅에 적용되는 所得控除의 수준이 우리나라 전체적인 소득수준이나 경제여건에 비추어 비교적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稅發委”的 연구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所得控除의 수준이 우리나라 소득수준이나 경제여건에 비추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일까. 도저히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현실적인 경제여건과 生計費를 감안할 때는 所得控除은 더욱 더 늘어나야 옳을 것이다.

개인 所得稅 비중이 보잘 것 없는 것은 오히려 資產所得을 우대하고 勤勞所得을 不利하게 대우하고 있는 것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현행所得稅法은 預金利子 財政證券 등 國債利子上場法人少額株主配當 등에는 10%의 低率로 分離課稅하고 있다. 高所得層의 資產所得도 綜合課稅되어야 勤勞所得과 衡平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과 아울러 각종 非課稅 減免稅 特例의 低稅率도 是正되어야 할 것이다. 私債利子 부동산所得 등 地下經濟의 隱性 · 脱漏所得에 대해서도 課稅를 正常화하도록 住力하는 것이 噴緊하다. 도대체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地下經濟의 比重이 너무나 크다. 그것에 대한 課稅만 正常화된다고 하더라도 個人 所得稅의 비중은 크게 늘어날 것이 틀림없다.

거꾸로 地下經濟의 實像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 파악하더라도 지금 식으로 分離課稅 등으로 대처한다면 社會正義의 면에서도 용납되기 어려울 것이다. 不動產 投機, 證券投機, 私債놀이, 기타 우리나라에 있어서 地下經濟의 규모가 큰 만큼이나 所得규모도 여간

큰 것이 아니다. 그 所得이 감추어져 있는 것 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公公然하게 誇示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正常의 生產 활동과 勤勞 行爲에 의한所得엔 綜合課稅로 重課하는 반면 地下經濟 활동이 높은 收益을 올리면서 無稅로 통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慾求不滿이 어찌할 것인지는 不問可知이다.

稅發委의 연구보고서는 일반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低所得層이 高所得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물고 있기 때문에 低所得層의 税金을 경감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만일 저소득층의 세금이 高所得層보다 과중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세금을 인하하기 보다 高所得層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야만 租稅體系를 위협하게 만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 財政需要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 아래서는 低所得層에 대한 소득세를 경감한다 하더라도 間接稅 負擔의 增加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低所得層에 대한 소득세 경감에 의한 소득계층간 상대적 균형회복을 다시 원점으로 환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税부담면에서 근로자가 다른 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면이 없지 않으나, 현재와 같이 개인소득세의 기능이 약화된 상태 아래서는 근로자에 대한 세금경감 조치는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게 될 가능성이 있음으로 근로소득이 아닌 유형에 대한 税金부담을 늘림으로써 균형을 이루도록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稅發委는 전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稅發委의 전의는 결국 정부 税制 당국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低所得層의 세부담이 과중하더라도… 근로소득자의 부담이 다른 소득자에 비해 불리하더라

도… 문제의 是正은 과중하고 불리한 쪽의 税負擔을 경감해서가 아니라 가볍고有利한 쪽의 부담을 늘리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인데, 一理는 있는 얘기이다. 그러나 低所得層의 세부담과 근로소득자의 부담이 절대적으로 과중하고 불리하다면 그것을 경감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低所得層에 대한 税負擔경감이 間接稅 비중을 확대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하는 수 없다. 그렇다고 低所得層에 대한 부담을 늘려서 間接稅 비중을 줄인다는 것은 語不成說인 것이다.

한편 企業課稅制度의 개선에 있어서는 企業側으로 보아서는 企業의 財務構造를 개선하여 지나친 他人資本依存度를 줄이고 國際競爭力を 강화하는 税制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국 企業課稅를 경감하는 것으로 될 수 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 다른 부문의 국민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낳는다. 가능한 한 이는 피해야 하는 것이다. 租稅減免規制法의 감면대상 및 감면폭을 축소함으로써 税收를 그런데로 확보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작년 연말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은 감면폭을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 조세감면 규제법의 운용은 그것이 직접세 위주로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따라 間接稅為主로의 税收構造를 더욱 확대하는 구실을 다 해 나왔다. 거기에 名目税率은 높은데도 불구하고 減免幅이 큰데 따라 實効税率은 낮아지는 방향으로 진전되어 나왔다. 그뿐 아니라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산업이나 기관이 감면을 간청하게 되고, 特例를 허용해 주는 경우가 허다하여 税法構造가 복잡해지고 있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앞으로의 企業稅制의 方向은 조세지원을 하더라도 지금의 直接稅減免에서 間接稅減免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 紙面 관계상 税發委연구보고서가 요약하고

있는 法人税制의 개선 방안을 열거하는 것으로 이 원고를 그치기로 한다.

첫째 기업과세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法人所得과 株主配當所得의 2重課稅를 조정하고, 法人의 同一所得에 대한 2重課稅를 배제하며 經濟實體에 따른 法人稅를 부과한다. 둘째, 과세소득 계산을 기업회계 기준과 일치시켜 가능한 한 稅務會計와 企業會計의 차이를 조정해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한다. 셋째, 非營利法人에 대한合理的課稅方法을 모색하고, 네째, 기업재무 구조를 유도하기 위해서 直接金融費用과 間接金融費用의 차이를 축소시키고, 퇴직급여 충당금제도를 개선시키는 한편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經濟的인 減價를 인정하고, 缺損金의 移戻制度의導入을 고려한다. 다섯째, 合

併의 경우에 租稅부담을合理化하고, 여섯째, 租稅債務가 확정된 이후의 권리구제 제도를法制化하여 납세자를 보호해야 한다. 일곱째, 법인세 分納에 대한 延納利子税를 制度化하며, 여덟째, 상법개정에 따라 법인세법 규정을 일치시킨다는 것이다.

이상 税制發展의 방향을 개략적으로 기술하였다. 부가가치세제, 財產稅制, 間接稅制 등에 걸쳐 의당 논급해야 할 것이겠으나 紙面 관계상 도저히 어쩔 도리가 없었음을 부언하면서 역시 이번에도 稅收要求에 밀려 税制發展은 公平化와는 더욱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